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규정한 다른 관계 규칙의 조문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4. 5. 29. ~ 7. 8. 입법예고 예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에”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로, “도로교통공단은”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도로교통공단 소속”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도로교통공단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

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8조의2제2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의”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의”로, “도로교통

공단 소속”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에”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로, “도로교통공단은”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이 발행·관리하고”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관리하고”로,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3조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비고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비고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비고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교육장소란, 신청방법란, 주의사항란 및 직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장소	한국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육장
신청방법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원하는 일시에 교육 신청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20호의4서식 직인란 및 도로교통공단 로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 로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한국도로교통
공단 로고

별지 제20호의5서식 직인란 및 도로교통공단 로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
로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한국도로
교통공단
로고

별지 제25호서식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28호의2서식 직인란 및 도로교통공단로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
로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한국도로
교통공단
로고

별지 제28호의4서식 직인란 및 도로교통공단 로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
로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한국도로
교통공단
로고

별지 제41호서식 공고번호란, 4호 가목, 5호 가목, 6호 및 공고기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 호
(○○ 경찰서장 공고 제 호)

4. 제출서류 등

-
- 가. 응시원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나.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수료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첨부된 것을 말합니다)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처

- 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나. 경찰서: 교통계

6.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장(○○경찰서장)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신청인란, 앞쪽의 오른쪽 직인란 및 뒤쪽의 왼쪽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응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신청인란, 앞쪽의 오른쪽 직인란 및 뒤쪽의 왼쪽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응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신청인란 및 뒤쪽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64호서식 1쪽 신청인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65호서식 1쪽 신청인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70호서식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인

별지 제72호서식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

별지 제73호서식 영문통지란 및 직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Article 88 you are notified to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 aptitude test as below, Provided not to do so your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 would not have its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Testing Place: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Address)
Time: Until

From: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하의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장소: (주소)
일자: . . . 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

별지 제74호서식 신청인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According to 1 of Article 88 of the Road Traffic Law, I hereby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 attached the physical examination card.)

년 월 일(Date:)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운전교육: 1회 위반 6시간, 2회 위반 8시간, 3회 이상 위반 16시간 / 배려운전교육: 6시간 / 법규준수교육(의무): 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6시간. 다만, 음주운전교육은 1회 위반 6시간, 2회 위반 8시간, 3회 이상 위반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 다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4. 그 밖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일정·장소 및 수강료 등은 [한국](#)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85호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27호서식 신청인란, 수수료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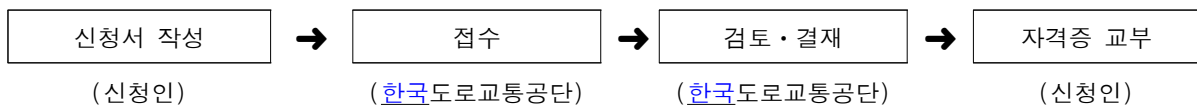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수수료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처리절차



별지 제128호서식 신청인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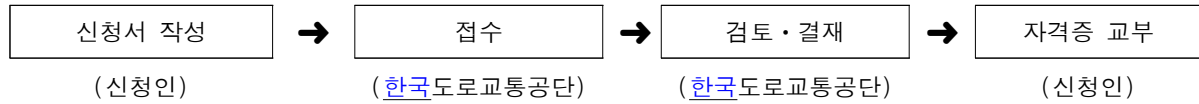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처리절차



별지 제147호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영수증 왼쪽면 및 오른쪽면 직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왼쪽면>

	취급자	인
한국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	

<오른쪽면>

	취급자	인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159호의2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제6호 운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별지 제160호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If you attend the special education for traffic safety at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before sum of penalty score on your driver's license is not reach 40, 20 penalty score will be reduced(Those who attended the special education for traffic safety within 1years, he or she can not receive penalty reduction)

제2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